

의안번호	2207179
의 퇴 인	김용태 의원
회 답 일	2025.01.13.
추계번호	24C6369

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유네스코한국 위원회의 설치)	(제3항)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(제4항)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2	안 제26조 (경비지원)	(제2항) 아태교육원은 제2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재량규정
3	안 제28조 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)	지방자치단체는 아태교육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(유네스코한국 위원회의 설치) 안 제26조(경비지원) 안 제28조 (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유네스코 활동 확대 및 위원회 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

1) 안 제25조는 유네스코 아시아·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사업에 ‘세계시민교육’을 추가하였으나, 현재 아태교육원은 세계시민교육 전문유네스코 카테고리2기관으로 세계시민교육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중(자료: 교육부)이므로 추가재정소요로 계상하지 않음

의 내용으로 개정안 시행시 재정소요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
- (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) 개정안에 따라 국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와 공동으로 유네스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대비 지원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지원의 증가여부 및 구체적 규모 등을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－ 2025년 현재 교육부·외교부·환경부·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5,478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, 2024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함²⁾
 - －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경비 외에 지원액이 증가하거나 추가사업 진행에 따른 예산 지원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이의 여부 및 그 구체적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

[표]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5년 예산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수입			지출		
구분	금액	비고	구분	금액	비고
보조금	5,478	교육부: 3,923 외교부: 270 환경부: 72 국가유산청: 1,100 기타기관: 113	사업비	5,983	
자체수입	6,832	재산임대수입	인건비	4,529	
기부금	1,005		운영비	2,399	
자산전입금	475		적립금	510	퇴직적립금, 장기수선충당금
이월금	635		이월금	1,045	
잡수입	41				
합계	14,466		합계	14,466	

자료: 유네스코한국위원회

2) 교육부와 유네스코, 경기도교육청,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총 20.2억원(교육부 3억원, 경기도교육청 16.2억원, 한국위원회 1억원)의 예산으로 '20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'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(자료: 교육부)

- (안 제26조) 개정안은 유네스코 아시아·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(이하 “아태교육원”이라 한다)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 사업내역 및 소요 예산규모를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아태교육원은 2015년부터 17개 시도교육청과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양성연수(매년 68명)와 시도선도교사(매년 600명)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³⁾
 - 다만, 개정안 시행 후 해당 사업 이외의 사업 실시 여부와 내용, 소요비용 등을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곤란함
- (안 제28조)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태교육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아태교육원에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수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 추가로 무상 사용·수익하게 될 재산의 내역 및 비용 등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아태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으로부터 현 사용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, 이의 임차료는 486백만원임
 - 개정안 시행 후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임차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며, 이 외에도 지방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·수익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예측이 곤란함
- 이에 개정안은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곤란하여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3) 아태국제이해교육원지원-세계시민 선도교사 양성사업 (2025년도 예산 110백만원) (자료: 교육부)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혜승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혜승	02-6788-4627	hs0387@assembly.go.kr